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본문 중 “납부하여야”를 “납부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하여야 하며”를 “하며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금액으”를 “금액의 2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

제1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시스템 검증 업무
-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 납부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제10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

에 따른다.

[별표 1의2]

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기준(제12조제4항 관련)

I. 일반기준

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금액은 II. 과징금 조정기준에 따른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.

II. 과징금 조정 기준

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조정 금액

가.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유지한다.

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금액

가.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하여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.

나. 가.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위반 영업자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로 인해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<u>납부하여야</u> 한다. <u>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<u>하여야</u> 하며,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2조(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)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<u>금액으로</u>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0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납부해야</u> ----- --. <u><단서 삭제>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하며</u>----- -----.</p> <p>제12조(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금액의 2배</u>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감</u></p>

④ (생략)

제14조(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)

① (생략)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식품위생법」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14조(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시스템 검증 업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수입식품정책과	
연 락 처	043-719-2168